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1,111,299,344	33,338,980
일반회계		853,772,570	25,613,177
특별회계		257,526,774	7,725,803
	공기업특별회계	185,718,082	5,571,542
	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76,048,436	2,281,453
	상수도사업특별회계	53,518,863	1,605,566
_	하수도사업특별회계	56,150,783	1,684,523
	기타특별회계	71,808,692	2,154,261
	주택사업특별회계	3,293,703	98,811
	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	4,709,067	141,272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	200,000	6,000
	기반시설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	52,189	1,566
	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	7,160,088	214,803
	교통사업특별회계	11,956,836	358,705
	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	23,066,012	691,980
	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	21,370,797	641,124

- 제 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세출 예산 "과 같다.
-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 채무부담행위조서 " 와 같다. (해당없음)
-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 "와 같다.
-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 "와 같다. (해당없음)
-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206,566천원으로 한다.
- 제 7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8,800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